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다전공 제도 주요내용

- 이수전공 종류: 복수전공, 연합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신청자격
 - 공통자격: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 전공별 특이사항
 - 연합전공: 규정상 성적제한은 없으나,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
- 정원(연간 선발인원)
 - 복수·부전공: **학과(부)별 3학년 정원 2배 이내 (2022. 1. 28. 개정 사항)**
 - 연합·연계전공: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 관련 학과(부) 교수 3명 이상으로 구성
- 이수학점
 - 기본적으로 선발 시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학점 변경 시 해당 학과(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① 복수·연합·**학생설계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 ② 부전공·연계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 재학연한 연장
 -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 최대 1년 연장 가능**
 -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진입생부터 적용**
 - ★ **유의사항: 2023학년도 1학기에 16학기 재학중으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될 위기에 있는 학생이 4월에 202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23학년도 1학기에 재학연한을 소진한 것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2학기 선발을 근거로 재학연한 연장은 불가함**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은 운영기관인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공 적합성을 판단 후 승인하도록 변경